제268회 시의회 정례회
'16.6.16 보건복지위원회

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사전 보고

2016. 6. 16

여성가족재단

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사전 보고

제9조 임원의 임면

● 개정내용 : 이사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당연직이사 일부 제외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임원의 임면) 〈중략〉 ④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1.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2. 서울특별시 복지본부장 3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4. 여성가족부 추천 실·국장급 공무원 1인 5. 서울시성평등위원회 위촉직 위원장이 추천하는 성평등위원회 위원 중 1인 〈이하 생략〉	제9조(임원의 임면) 〈중략〉 ④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1.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〈삭제〉 3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〈삭제〉 5. 서울시성평등위원회 위촉직 위원장이 추천하는 성평등위원회 위원 중 1인 〈이하 생략〉

※ 최근 3년간 복지본부장/여성가족부 국장 이사회 참석률 : 0%

● 개정목적 : 이사회 참석률 제고 및 관련 법령·지침의 적정 적용여부 검토 강화

제18조 임·직원의 보수

● 개정내용 : 당연직이사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

- 이사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당연직이사에게 30만원(회) 지급

※ 지방 출자·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 의거 : 위원회참석수당은 공무원 지급이 불가하지만 이사회 참석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임·직원의 보수) 〈중략〉 ②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	제18조(임·직원의 보수) 〈중략〉 ②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〈삭제〉

● 개정목적 : 당연직이사의 참석률 제고 및 市-기관간 소통·협력 증대